2019. 05.10. 발표자료

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

#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사업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

# 발 표 순 서

01. 마을관리협동조합 개요

02.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단계별 공공지원

03.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사례

04.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주체별 역할

05. 2019년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(안)

06. 질의응답

# 00.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
## 가.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
-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개정,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(2018.12)

- **(설립 및 운영)** 『사회적기업 육성법』, 『협동조합 기본법』 근거하여 설립 운영
 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진흥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전문지원기관

*-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*
*-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*
*- 업종, 지역, 중앙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*
*-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*
*- 경영, 기술, 세무, 노무, 회계 등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*
*-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*
*- 사회적기업 인증, 실태조사*
*- 사회적기업 판로개척*
*- 기업/비정부기구 등 민간과 사회적기업 협력 지원 등*

*- 협동조합 교육훈련 지원*
*- 협동조합 판로개척, 홍보 및 기념행사*
*-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*
*- 협동조합 교류협력, 경영지원, 교육훈련 및 행사*
*-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공개, 경영공시 지원*
*- 사회적협동조합, 연합회 설립인가 지원*
*- 협동조합 및 연합회 현장 모니터링*
*-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감독에 필요한 내용 확인 등*

- **(조 직)** 총 4개 본부(기획관리본부, 창업육성본부, 지속성장본부, 협동조합본부), 1개 실(사회적경제지원실), 14개 팀

- **(도시재생지원기구)** **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중심의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**

- 협동조합본부 협력운영팀

- 원내 및 원외협력*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

*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,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,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

# 01. 마을관리협동조합 개요

## 가. 추진배경

- **도시재생사업**, 노후주택의 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**노후주거지**의 **주거환경개선** 추진
-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,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 · 관리할 주민 중심의 자조 조직 필요
- **마을관리협동조합, 노후주거지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기초생활인프라를 유지 · 관리**

  ☞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여 **마을 공공서비스 플랫폼**으로 활용

## 나.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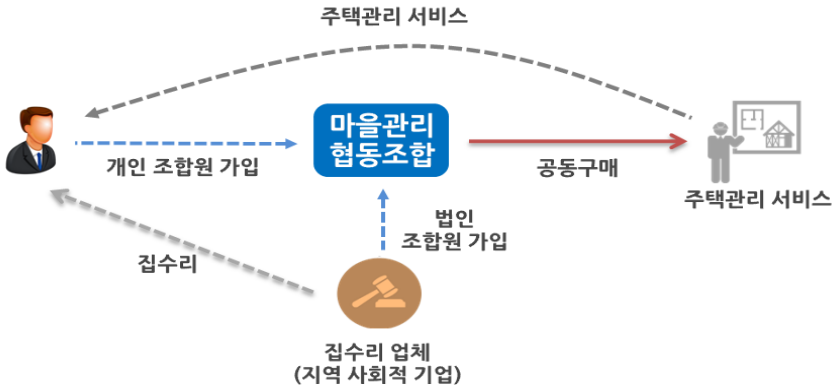


- **(사업대상)**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지역

  * `16년 선정 및 뉴딜, 소규모재생사업, 주민참여프로젝트팀 등

- **(법 인 격)** 사회적협동조합

  – 비영리법인, 공익사업 40% 이상 수행, 배당불가 등

- **(설립담당)** 국토교통부 설립인가

- **(주요기능)** 물리적 · 경제적 · 사회적 기능

  – (물리적 기능)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**마을의 공공 영역을 공동 관리**하는 것, **정체성**이자 **경쟁력**

  – (경제적 기능) **마을 관리가 필요한 측면을 가장 잘 아는 주민**을 통해 마을관리 실천
 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령자, 경력단절여성 등의 **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및 나눔**

  – (사회적 기능) 마을관리영역, 많은 **지역주민들의 참여** 필수, 주민 간 갈등 조율 및 **협동의 토대** 구축

## 다. 기관별 역할

- **(마을관리협동조합)** 의사결정 : 총회 및 이사회, 사업실행 : 사무국
- **(국토교통부)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인가** 및 **공공지원** 제도 마련
- **(지자체)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**(활성화 계획 등), **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**, 갈등관리위원회 참여, **공공지원 집행 및 관리**
- **(도시재생지원기구)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**, 관련 **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** 및 관계자 역량강화교육, 마을관리협동조합 모니터링 등
- **(운영지원전문기관) 마을관리협동조합 자금 및 회계관리 지원**, 조합원 모집 및 홍보,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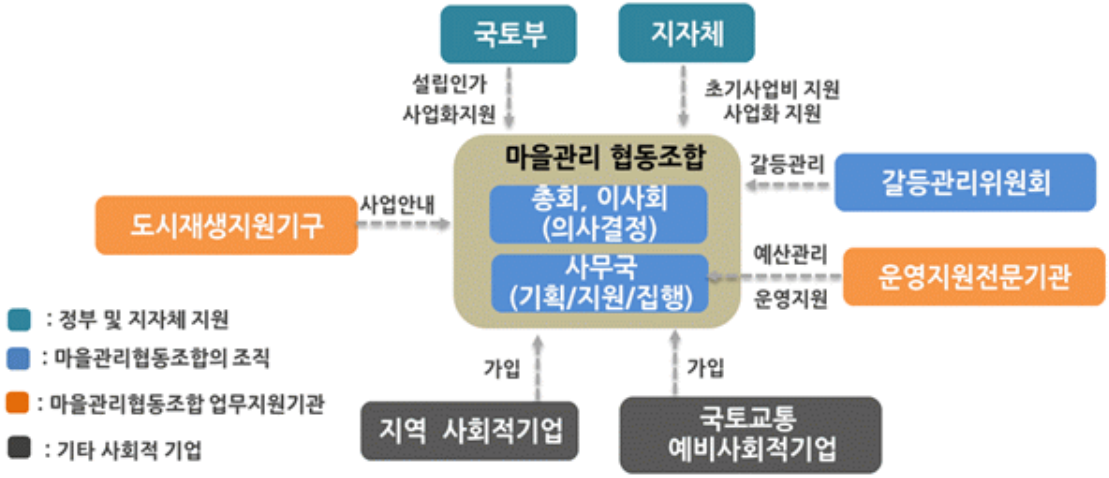

# 02.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단계별 공공지원

## 가. 육성절차

- **계획수립** – **설립인가** – **사업시행** 3단계로 구분

| | |
|---|---|
| 계획수립 |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선정 |
| |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|
| 설립인가 |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요청(지자체 → 도시재생지원기구) |
| |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프로그램<br>- 기초교육 (도시재생지원기구 직접 운영)<br>- 실전준비 (개별 지자체 수행 및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원) |
| |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인가 (조합 → 국토교통부) |
| 사업시행 | 마을관리협동조합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<br>- 갈등관리위원회 구성, 운영지원전문기관 지정<br>- 연차별 사업 실행 계획(안) 수립 |
| | 공공지원 신청 및 시행 (조합 → 지자체) |

# 02.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단계별 공공지원

## 가. 육성절차

▪ **계획수립**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선정 →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(지자체)

<도시재생사업계획 반영 사항(지자체)>

◦ **(마을운영·관리계획 수립)** 마을운영·관리의 대표적 주체로 마을관리협동조합 명시,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공용주차장, 공공임대주택, 생활편의시설 등 유지 관리 방안 기술

◦ **(예산편성)** 마을운영·관리계획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민주도사업(역량강화사업, 거버넌스 운영 등),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등 관련 예산 반영

※ (참고) 도시재생 뉴딜사업(우리동네살리기, 주거지지원형) 활성화(실행)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
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-1391('18.11.7), 주거재생과-296('18.3.15)

▪ **설립인가**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요청(지자체) → 설립 지원 (도시재생지원기구) → 설립인가 신청(조합)

| 사업계획수립 /승인 | 조합 설립 지원 요청 | 기초교육 | 실전준비 | 조합설립 인가 |
|---|---|---|---|---|
|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<br>마을운영·관리계획 수립 | 연 2회 상/하반기<br>마을관리협동조합육성신청 | 마을관리협동조합 이해<br>협동조합 조직 운영, 사업 | 설립인가 준비 및<br>공공지원요건 충족 지원 | 관련 서류검토 |
| 지자체, 국토교통부,<br>(도시재생지원기구) | 지자체,도시재생지원기구 | 도시재생지원기구 | 지자체<br>(도시재생지원기구) | 국토교통부 |

▪ **사업시행**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 및 공공지원 신청(조합) → 공공지원 시행(지자체)

<갈등관리위원회>

◦ **(설치시기)**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이후 총회 의결을 거쳐 설치, 설립 전 도시재생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 갈등 관리

◦ **(구성위원)** 총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, 총 위원의 ½이상은 외부위원, 외부위원으로는 지자체, 도시재생지원기구 필수

◦ **(설치운영)**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별도 규정으로 정함

# 02.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단계별 공공지원

## 가. 육성절차

<운영지원전문기관>

◦ **(선정시기)**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인가 이전 또는 이후

◦ **(선정방법)** 조합원 간 협의하여 결정, 지원기간 및 내용 등은 조합설립 이후 운영지원전문기관 업무협약서를 통해 확정

◦ **(지원기간)**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초기 안정적 운영 및 회계관리에 전문성을 위해 설립일로부터 최소 2년 간 지원

<공공지원 필요요건>

◦ **(설립 목적 및 명칭)**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마을관리협동조합, 타 사회적협동조합과의 구별을 위해 **'도시재생사업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'** 명칭 사용

* 제출서류 : 설립인가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마을관리협동조합 공증 정관

◦ **(사업구역)** 도시재생 사업구역 대상 원칙,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 시 해당 사업구역이 포함된 시·군·구까지 확대

◦ **(사업내용)** 표준정관의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구체화

* 제출서류 : 연차별 사업 실행계획서 및 수익·지출 예산서

◦ **(조합원자격)** 사업구역 내 또는 해당 시·군·구 거주 주민 및 주사무소를 둔 자

◦ **(조합원 수)**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시 설립동의자 수 대비 조합원이 2배 이상 가입

* 제출서류 : 조합원 명부 및 법인통장사본(출자금 확인)

◦ **(임원자격)**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일정기간 이상 참여한 지역주민, 정관을 통해 임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

◦ **(사무국 설치)** 사업집행 조직운영, 총회 및 이사회 운영지원, 홍보 및 조합원 모집,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실행 등 수행

* 제출서류 : 직원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, (필요 시) 운영지원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서

◦ **(갈등관리위원회 구성)** 조합원 간, 또는 해당 조합과 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및 중재 지원

* 제출서류 :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위원 명부 (소속 필수)

◦ **(운영지원전문기관 선정)** 해당 조합의 자금 및 회계관리 지원, 사업계획 및 실행 지원 (초기사무국 역할 수행) 등

* 제출서류 : 운영지원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서

# 02.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단계별 공공지원

## 나. 공공지원

- ①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, ②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, ③ 수익사업 지원
- ①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(설립 전·후)

-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계획(활성화 계획 등)에 따라 **도시재생 사업비**(주민역량강화사업 및 거버넌스운영사업) 활용,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활동 등 지원 가능

- **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프로그램**

- 공공지원 요건을 갖춘 마을관리협동조합 대상 **초기사업비*** 지원

* `16년 선정 도시재생사업, `17년 이후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한하며,
소규모재생사업,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등은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지원 가능

<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>

◦ **(지원한도)**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이후 **2년 간 최대 5천만원**

◦ **(지금용도)**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, 조합원 모집 및 홍보, 사업 실행 등

◦ **(집행관리)** 운영지원전문기관

| 공공지원 요건충족 | 공공지원 신청 | 공공지원 검토 결정 | 초기사업비 집행·관리 | 초기사업비 정산 |
|---|---|---|---|---|
| 연차별 사업 실행계획서<br>수익 지출 예산서 작성 등 | 초기사업비 등 신청 | 공공지원 요건충족 여부 | 마을관리협동조합<br>초기사업비 | 마을관리협동조합<br>초기사업비 |
| 마을관리협동조합<br>(운영지원전문기관) | 마을관리협동조합 | 지자체 | 운영지원전문기관<br>(마을관리협동조합) | 지자체, 마을관리협동조합<br>운영지원전문기관 |

- 『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 제30조의 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근거를 활용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 **초기 사무공간** 지원

## 나. 공공지원

▪ ②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

-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시, **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관리위탁** 계획 반영
- 수의계약 및 경비지급 등 세부사항은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』 제27조, 『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(행안부 고시)』 제10조 별표4

  * 관련 의사결정은 행정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 또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통해 결정

- **마을관리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업 위탁**

<마을관리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(안)>

◦ **(계약방식)**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

◦ **(대상사업)** 재활용수거사업, 가로청소 등 지역사회 거주환경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수행 가능한 마을관리 공공서비스

◦ **(추진절차)** 지자체(도시재생추진단 또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)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가능한 마을관리영역의 사업 발굴 → 사업범위 및 내용 협의(지자체, 조합) →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→ 수행

< 공유시설물 위탁관리 업무위탁(예시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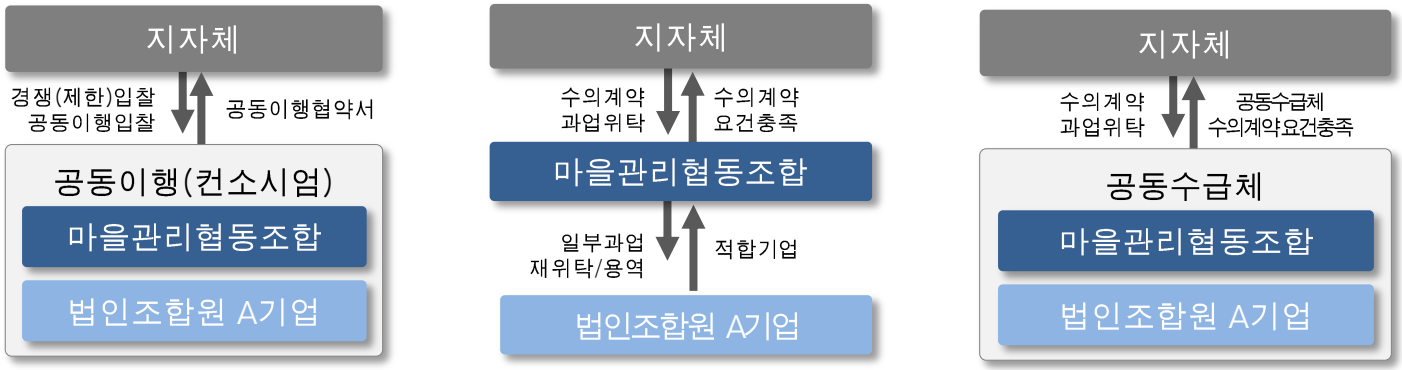


<경쟁입찰> <수의계약_마을조합> <수의계약_컨소시엄>

## 나. 공공지원

▪ ③ 마을관리협동조합 수익사업 지원

-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

### 주택관리 서비스

◦ (현 황) 저층주거지 노후 단독 · 다세대 주택, 장기적 관리 계획과 공용부 관리 필요

◦ (사업화) **대한주택관리협회와의 계약을 통한 주택관리서비스 공급**

* (마을관리협동조합) 주택관리사협회와의 계약 체결
(주택관리사) 기초적인 주택관리업무 수행
(주택관리사협회) 주택관리사에 대한 손해배상공제
지역주민 주택관리사로 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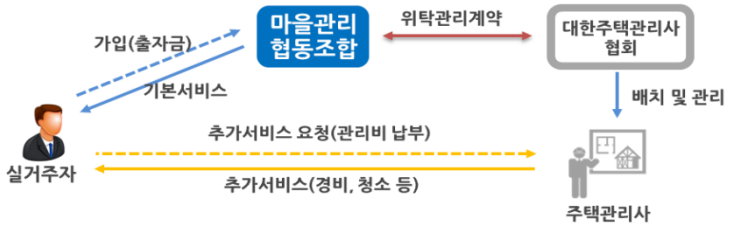


### 집수리 서비스

◦ (현 황) 노후주거지 집수리 수요 높은 실정 ※집수리 비용 부담 및 수요 파악 어려움, 전문 사업자 부재 등

◦ (사업화) **터 새로이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한 집수리서비스 공급**

* (마을관리협동조합) 조합원 집수리 수요파악
터 새로이 사업자에게 집단 발주
잉여금 보유 시 수리비 일부 지원
(국토교통부) 터 새로이 사업자 선정 및 비용지원

# 02.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단계별 공공지원

## 나. 공공지원

▪ **마을관리협동조합 수익사업 지원**

- **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**를 제공할 수 있도록 **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** 지원

### 사회적 주택

◦ (현 황) 사회적 주택 사업 추진 ※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및 주거서비스 공급

◦ (사업화) **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으로 수의지정 받아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수행**

* (공공임대주택)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수의 위탁
(마을관리협동조합) 임차인에게 시세 50~30% 재임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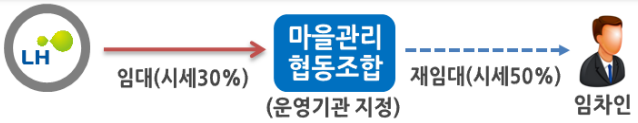


### 에너지 자립

◦ (현 황) 저층 노후주거지 에너지자립 지원 필요 ※ 자가용 태양광 비용부담 및 설치여건 컨설팅 필요 등

◦ (사업화) **한국에너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사업 추진**

* (마을관리협동조합) 조합원 자가용 태양광 설치 수요조사
잉여금 보유 시 설치비용 일부 지원
(한국에너지공단)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지원(가점)
유휴공간 활용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비 5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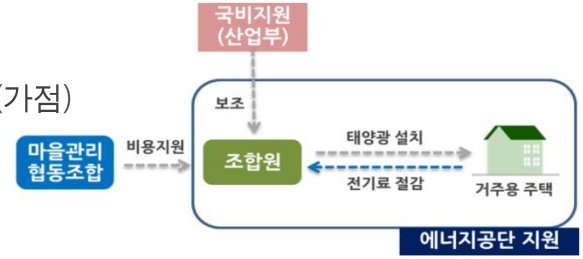

## 나. 공공지원

▪ **마을관리협동조합 수익사업 지원**

- **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**를 제공할 수 있도록 **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** 지원

### 마을상점

◦ (현 황) 저층 노후주거지 민간영역의 판매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부족

◦ (사업화) **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 유통망 및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지원**

* (마을관리협동조합) 판매시설 기획
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 사회적경제 연계 유통망 지원
(지자체)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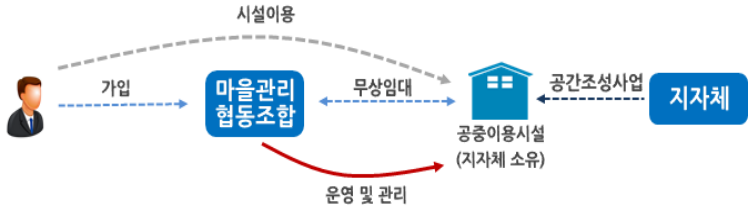


### 태양광 발전

◦ (사업화) **지자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공동 출자**, 지분율대로 **운영 수익 분배**
**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및 컨설팅 지원**

* (마을관리협동조합)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
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참여
(운영지원전문기관) 태양광 발전 저리 융자상품 지원
(한국에너지공단)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총괄 컨설팅
태양광 설치 사업자 선정 지원
(지자체) 태양광 설치장소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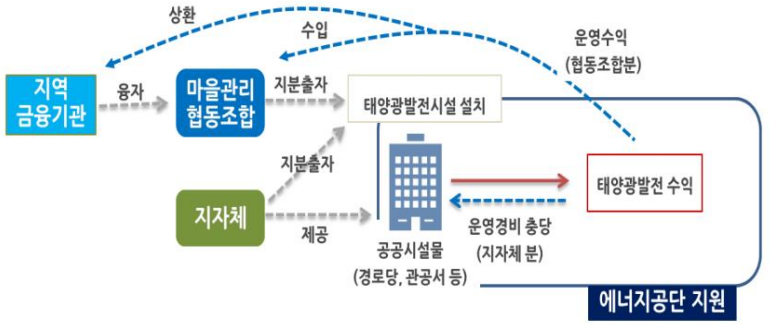

## 다. 사후관리

▪ **성과관리**

- 지자체는 매년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실적, 공공지원 추진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, 필요 시 도시재생활성화(실행)계획에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 조치

▪ **실적평가**

-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연차별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운영, 지자체의 공공지원 사항 실행여부 등 평가,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보고

# 03.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사례

## 인천만부 마을관리협동조합

- **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과정**

- **마을관리협동조합 주요사업** (마을밥상, 마을문화상점, 마을관리사무소, 조합원 교육 및 홍보)

2019년 04월 10일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설명회 인천만부 마을관리협동조합 발표자료

# 03.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사례

## 인천만부 마을관리협동조합

▪ **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을 위한 주체별 역할**

- **(남동구청)** 도시재생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 계획 및 관련 예산 수립
  정기적인 **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TF 운영**
 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 사업공간 마련 지원
 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위탁 관련 계획(안) 공유
- **(현장센터)** 현장센터 사업연계를 통한 **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화 지원**
 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참여 가능한 주체 발굴
- **(권역별 통합지원기관)**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컨설팅
  **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행정** 관련 전반 지원
  **관련분야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네트워크** 연계
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화 지원
- **(남동신협)** 마을관리협동조합 **조합원 모집 및 홍보**
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성 분석 및 판로개척 지원
  지역사회공헌사업 연계
  향후 **마을관리협동조합 자금 및 회계관리 지원**

# 04.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 주체별 역할

## 가. 지자체 및 현장센터

-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지속 가능한 운영에 있어 **가장 확실한 지원자**의 역할 담당
- **마을관리협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**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매체로 인식

  *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마을관리서비스, 일자리 창출 및 나눔, 상업적 형태로 존재하진 않지만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근린서비스를 제공,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제고,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지자체 활동을 지원

- **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활용을 통한 마을 유지 · 관리 계획 수립(관련 조례 등)**
- **정기적인 회의, 설립TF 운영** 설립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, 현장센터, 운영지원전문기관,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간 정보 공유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 점검을 위해 필요

<정기적인 회의운영의 효과>

◦ **(신뢰관계형성)**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주체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해나가며 조합 사업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

◦ **(사업계획수립)**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에 대한 정보를 제공, 이를 기반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연차별 사업계획(안) 수립 및 필요역량 사전준비 대응

◦ **(설립현황점검)** 지자체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 추진현황 점검, 필요자원 및 이슈사항 사전준비 대응

◦ **(주체역할분담)** 관련 주체별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및 향후 지원계획(안) 마련

- **지역현황파악** 주민들이 지역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필요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지원
- **협력네트워크** 주민들이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합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, 언제 · 누구와 · 무엇을 ·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, 구체적인 실행계획(안) 마련 지원

# 04.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 주체별 역할

## 나.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(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)

- **설립지원** 사회적경제·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전문성 보유, 마을관리협동조합 발기인 조직화 및 사업계획(안) 수립 지원, 설립인가 행정지원 역할 담당
- **협력네트워크**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연계

  *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생존하며 나름의 전략을 익혀온 선배 기업과의 연대

## 다. 운영지원전문기관 (새마을금고, 신협)

- **자금 및 회계관리 지원** 초기사업비 지원기간 동안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회계관리 지원은 필수
- **사업지원**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주요사업 사업성 분석 및 판로개척 일부 지원
- **지역사회 공헌사업**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활동과 운영지원전문기관의 지역사회 공헌사업과 연계
- **조합원 모집 및 홍보**

<운영지원전문기관 지정시기>

◦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인가 준비단계에서부터 운영지원전문기관 지정 또는 지정 준비 필요

-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운영지원전문기관 간 **관계형성을 통한 신뢰감 구축**
-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함께 사업성 분석 및 제품 판로개척 방안 고민, 이를 통해 **서로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** 및 **원활한 협력체계 구축** 가능

# 05. 2019년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(안)

## 가. 지원목적

- **지속가능한 도시재생**을 위한 **주민 중심의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**
-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한 '공동출자-공동생산-공동소비-지역사회 재투자' **지역사회 순환 경제체계 조성**

## 나. 지원내용

- **마을관리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육성 지원**
  - 사업설명회 및 상시상담
  -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기초교육 운영 및 실전준비 지원
  -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기반조성(주요 핵심사업 체계화)
- **지역단위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 체계 마련**
  - 해당 지자체 및 현장센터,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,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협력 체계화 지원
- **마을관리협동조합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원**
  - 관련분야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네트워크 지원
  - 마을관리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
  - 운영지원전문기관 역량강화 지원
- **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**
- **마을관리협동조합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제·개정 지원**

# 05. 2019년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(안)

## 다. 기초교육 운영 및 실전준비 운영 지원

-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희망하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 대상 **마을관리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한 설립 지원**

- 기초교육 운영 및 실전준비 운영 지원 절차 및 내용

  - **(접수공고)** 년 2회 상·하반기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신청접수 공고
  - **(신청접수)**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접수기간 내 공문 신청
  - **(기초교육)** **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**, 접수된 지자체 및 주민 대상 마을관리협동조합 이해 등 기초교육 운영
  - **(실전준비)** **지자체 개별 운영**,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계획 수립 및 정관 작성, 창립총회 등 설립인가 준비*

    * 도시재생지원기구는 해당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계획(안) 및 정관 검토,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, 필요 시 전문가 자문 등 지원
  - **(설립인가)** **마을관리협동조합 신청**, 국토교통부 설립인가

# 05. 2019년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(안)

## 다. 기초교육 (도시재생지원기구)

- **(교육방향)** 마을관리협동조합 특성, 협동조합 방식의 조직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이해
- **(교육대상)**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신청 접수한 지자체 · 지역주민, 운영지원전문기관 등
- **(교육형태)** 권역별 집체교육, 필요 시 현장간담회 운영*
  *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관련 이슈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 운영
- **(교육일정)**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접수 마감한 날로부터 1달 이내 운영
  * 권역별 기초교육 운영 일정 및 장소는 향후 확정 예정
- **(교육내용)** 총 8시간 내외 운영

**1.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이해 (1시간)**
- 도시재생지역 마을관리협동조합 기능 및 미션
-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공공지원사항 안내

**2. 협동조합 정의, 가치 및 원칙 (1시간)**
- 협동조합 정의 및 정체성, 7원칙
- 로치데일/몬드라곤 등 성공한 협동조합 사례 소개

**3. 협동조합 특징 및 유형 (0.5시간)**
- 법인 유형,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
- 협동조합 유형 및 유형별 사례 소개

**4. 선배 협동조합 운영 사례 (1시간)**

**5. 마을관리협동조합 조직 운영 (1시간)**
- 경영구조, 조합원 및 임원의 책임, 권리, 권한
- 협동조합 갈등 이해 및 해결

**6. 마을관리협동조합 표준정관례 (1시간)**
- 협동조합 정관의 성질과 기능
- 마을관리협동조합 표준정관계 설명 및 작성유의점

**7.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등기 (1시간)**
- 설립신고, 설립등기, 사업자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

**8. 마을관리협동조힙 비즈니스 모델 수립 (1.5시간)**
- 마을관리협동조합 비즈니스 아이디어 및 발굴 도구
- 비즈니스 모델 작성 및 검증

## 라. 실전준비 (지자체 개별수행)

- **(운영방향)** 지역주민들의 **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인가 준비** 및 **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 지원**, 그 과정 속에서 **지역주민들의 기초적인 사업 실행역량**이 **강화**될 수 있도록 운영 필요
- **(운영형태)**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전준비 운영방법 결정, 운영
- **(운영내용)**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인가 준비,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, 지역주민 역량강화 지원

· **(설립인가)** 발기인 조직화, 사업계획(안) 수립 및 정관작성, 창립총회 신청서류 구비 등 실무지원

- 설립인가 신청서류 구비 시,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신청서류 사전검토 필수

*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컨설팅, 인가 서류검토 및 보완 등을 위해 총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보유

-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준비 및 인가 신청, 관련 서식자료는 COOP협동조합 홈페이지(www.coop.go.kr)

· **(공공지원 필요요건)** 갈등관리위원회 구성, 운영지원전문기관 지정 등 지원

· **(주민역량강화)** 지역주민들이 조합 설립과정 속에서 기초적인 사업 실행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

- 예) 사업계획(안) 수립을 위한 **지역현황 파악**, 사업실행을 위한 **관련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네트워크 연계**, 다양한 협력 주체들과의 **정기회의 운영** 등 지원

# 05. 2019년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(안)

##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

| | | |
|---|---|---|
| 01 | 발기인 모집 | ·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|
| 02 | 사업계획 및 정관 작성 | · 설립할 조합의 목적, 명칭, 사업구역, 사업내용 등 발기인 작성 |
| 03 | 설립동의자 모집 | ·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(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포함) |
| 04 | 창립총회 공고 및 의결 | · 창립총회 개최 7일 이상 공고<br>· 설립할 조합의 정관, 사업계획 및 예산, 임원 선출,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결의 (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, 출석자 2/3이상 찬성) |
| 05 | 설립인가 신청서류 구비 | · 신청서류 작성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검토 |
| 06 | 설립인가<br>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| · **(신청접수)** 신청기관 → 중앙행정기관 |
| | | · **(검토요청)** 중앙행정기관 → 진흥원 |
| | | · **(서류공유)** 진흥원 →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|
| | | · **(현장실사·서류보완)** 진흥원,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|
| | | · **(결과보고)** 진흥원,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중앙행정기관 |
| 07 | 설립인가증 발급 | · 중앙행정기관 → 신청기관 |
| 08 | 설립사무 인계 | · 발기인 → 이사장 |
| 09 | 출자금 납입 | · 조합원 → 이사장 |
| 10 | 설립등기 | ·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|
| 11 | 사업자등록 | ·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|

## 마. 실전준비 모니터링

- **(운영목적)** 대상지별 **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준비 추진현황** 및 **주요이슈 확인** 등을 통해 원활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사례 관리, 이슈사항 대응
- **(운영형태)** 정기 모니터링, 대상지별 추진현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 보고

*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이후 연차별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운영 및 지자체의 공공지원 사항 실행여부 등에 대하여 평가, 평가결과 국토교통부 보고 (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참조)

# 06. 질의응답

## 질문 1. 공공시장 진입지원 필요

"마을조합이 별도의 기술자격을 갖추어 집수리사업 등 공공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움, 이에 대한 지원 필요"

☞ 초기단계 **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의 컨소시엄**을 통해 공공시장 진입

## 질문 2.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 필요

"지역주민들은 이미 충분한 교육을 받은 상태, 마을조합 육성에 필요한 것은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 "

☞ 마을조합의 미션과 특성, 협동조합 방식의 조직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이해 필요

☞ **사회적 일자리** 관련 자원 활용, 지속가능한 마을조합 운영을 위해선 **마을조합의 핵심사업** 필요

* 마을조합의 주요사업 : 공공과 민간시장 적정 비율

## 질문 3. 마을조합 표준정관

"표준정관에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부족, 보완 필요"

☞ **표준정관은 정관 작성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**,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마을조합이 정리

☞ 조합원들의 공동 필요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적 취지 고려 필요

## 질문 4. 기존 활동하는 주민협동조합

"지역에서 기존 활동하는 주민협동조합, 마을조합으로 전환할 경우, 별도의 설립절차를 거쳐야하는가"

☞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격, 사업범위, 경영공시 등의 의무사항 차이, 별도 절차 필요

## 질문 5. 협동조합 VS 주식회사,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

<협동조합 VS 주식회사>

| 구 분 | 협동조합 | 주식회사 |
|---|---|---|
| 목 적 | **조합원 편익제공** | **이윤의 극대화** |
| 조 직 | 이용자와 출자자 동일 (인적결합) | 이용자와 출자자 불일치 (자본결합) |
| 운 영 | **1인 1표 의결권**<br>조합원 참여/민주적 운영 | **1주 1표 의결권**<br>주주는 일상경영 참여X |
| 재 무 | 소유자(출자자)=이용자=관리자 | 소유자(출자자)≠이용자≠관리자 |
| 경제활동 | 호혜성에 기반한 협동모델 | 효율성에 기반한 계약모델 |

<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>

| 구 분 | 협동조합 | 사회적협동조합 |
|---|---|---|
| 법인격 | **(영리)법인** | **비영리법인** |
| 설립 | 시·도지사 신고 | 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|
| 사업 | **금융·보험분야 제외 모든 사업분야** | **공익사업 40%이상 수행** |
| 경영공시 | 의무사항 X | 의무사항 O |
| 법정적립금 | 잉여금 10/100이상 | 잉여금의 30/100이상 |
| 배 당 | **배당 가능** | **배당 불가** |
| 청 산 |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| 비영리법인 또는 국고 등 귀속 |

## 질문 5. 협동조합 VS 타법인,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

<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>

| 구 분 | 사회적협동조합 | 사회적기업 |
|---|---|---|
| 적용법령 | 협동조합기본법 | 사회적기업육성법 |
| 제도성격 | 인가제(법인격부여) | 인증제(자격부여) |
| 인가·인증담당 | 주사업 소관부처 | 고용노동부 |
| 법인성격 | 비영리 | 영리와 비영리 포함 |
| 이 윤 | 배당 불가 |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<br>이윤의 2/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이용 |

<협동조합 운영원리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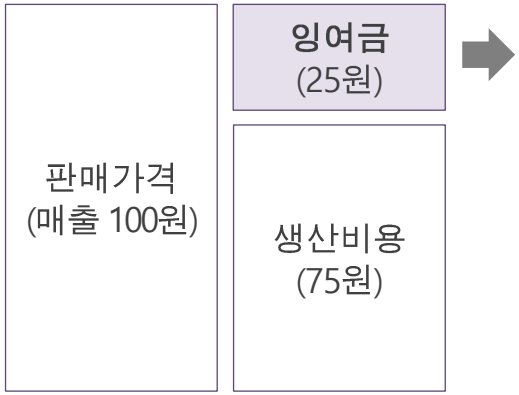


| | |
|---|---|
| 상법상 회사 | · 투자자 이윤 |
| 사회적협동조합 | · 취약계층 고용 및 필요 서비스 제공, 지역개발 |
| 소비자협동조합 | · 판매가격 인하 |
| 사업자협동조합 | · (농산물 등) 구매가격 인하 |
| 직원협동조합 | · 임금인상, 근로조건 개선 |
| 다중이해관계자 | ·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안정적 관계 유지 |

# 06. 질의응답

## 질문 6. 마을조합 사업 참여범위

"중심시가지형도 마을조합 사업 참여 가능한가"

☞ 참여가능

## 질문 7. 마을관리영역의 수익성 확보

"지자체의 공공서비스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마을관리영역을 마을조합이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별도의 수수료를 마을조합에 지불할 필요, 그러나 현실 불가,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"

☞ 마을관리영역에서 마을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공공지원 필요

☞ 도시재생 단위사업 활용, 마을조합이 마을관리 관련 역량강화 및 사업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

## 질문 8. 마을조합 인큐베이팅

"지속가능한 마을조합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교육과 더불어 인큐베이팅 필요"

☞ 현재 마을조합의 인큐베이팅은 실전준비 해당, 이는 지자체및 현장센터의 역할

☞ 보다 체계적인 비즈니스, 모델 수립을 희망하는 마을조합 대상 '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' 등과 연계 지원

## 질문 9. 마을조합 기초교육

"도시재생지원기구가 운영하는 권역별 기초교육 일정이 지역과 맞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"

☞ 해당 지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(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등)과의 협의하여 교육 추진 가능

☞ 단, 도시재생지원기구에게 마을조합 육성 추진과정을 별도 공유할 필요

# 참고사항

## 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(www.coop.go.kr)

| 지 역 | 지원기관명 | 주소 | 전화번호 |
|---|---|---|---|
| 서 울 | (사)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-39 (충정로2가) 200호 | 02-365-0330 |
| 부 산 | (사)사회적기업연구원 |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(구서동) 현대빌딩 2층 | 051-517-0270 |
| 대 구 | (사)커뮤니티와경제 |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(동산동) 유창빌딩 5층 | 053-942-8001 |
| 인 천 | (사)홍익경제연구소 |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80 (주안동) 3층 | 032-446-9491 |
| 광 주 | 사회적협동조합살림 |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(치평동) BYC빌딩 7층 | 062-383-1136 |
| 대전·세종 |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|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(선화동) 3층 | 042-223-9914 |
| 울 산 |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|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(태화동) 2층 | 052-222-6276 |
| 경 기 |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|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| 070-4763-0130 |
| 강 원 | (사)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|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(우산동)<br>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 | 033-749-3905 |
| 충 북 | (사)사람과경제 |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(운천동) 5층 | 043-267-9010 |
| 충 남 | (사)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|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-3, 아산어울림경제센터 4층 | 041-415-2012 |
| 전 북 | (사)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|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(팔복동1가)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| 063-213-2244 |
| 전 남 | (사)상생나무 |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, 3층 사단법인 상생나무 | 061-282-9588 |
| 경 북 | (사)지역과소셜비즈 |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(삼풍동)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2502호 | 053-942-8002 |
| 경 남 |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|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| 055-286-7971 |
| 제 주 | (사)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(이도일동)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(상록회관 1층) | 064-726-4843 |

# 감 사 합 니 다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